

국제 학생교류에 관한 내규

제정 2011. 01. 04.

제4차 개정 2025. 02.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31조의2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상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자매결연 또는 학생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 및 본교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과의 학생교류, 학점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2.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교류”라 함은 본교와 협력기관 간에 진행되는 학생의 교류를 말한다.
2. “해외연수”라 함은 본교의 학생이 총장의 허가를 받아 협력기관에서 수학하는 것을 말하며, “복수학위프로그램”, “장기해외연수” 및 “단기해외연수”로 구분한다.
3. “복수학위프로그램”이라 함은 본교와 협력기관과의 교류협정에 따라 상호 대학의 학위 수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연수를 말한다.
4. “장기해외연수”라 함은 본교와 협력기관과의 협정에 따라 1학기 이상 이루어지는 해외연수를 말한다.
5. “단기해외연수”라 함은 본교와 협력기관과의 협정에 따라 단기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해외연수를 말한다.
6. “교환학생”이라 함은 교류 협정에 따라 수업료를 납부하고 1년 이내 정규학기(계절학기) 교과과정을 이수한 후, 취득 학점을 소속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학생을 말한다.
7. “파견학생”이라 함은 본교와 협력기관의 수업료 납부를 조건으로 1년 이내 정규학기(계절학기) 교과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본교가 협력기관에 파견하는 학생을 말한다. (신설)

제3조(관할) ① **학생 교류의 선발 및 협력기관의 학생의 본교 수학과 관련된 사항은 국제교류처**에서, 학생교류와 관련한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교무연구처**에서 각각 관할한다.

② (삭제)

③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교류처장**이 총장의 허가를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학칙 등의 적용) 학생교류 참여학생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교류협정서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본교 및 협력기관의 학칙 등 제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해외연수

제5조(자격) 해외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칙에 의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징계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한 학생
2. 삭제
3. 삭제
4. 장기해외연수는 협력기관에서의 수학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하는 학과(학부, 전공)의 재학생(재학 예정인 학생 포함) 또는 본교에 3학기(편입생은 1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으로서 직전 학기의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인 학생. 다만, 졸업예정학기는 본교에서 졸업이 가능한 학생에 한한다.
5. 영어권으로의 장기해외연수는 협력기관에서의 수학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하는 학과(학부, 전공)의 재학생(재학 예정인 학생 포함)으로서 직전 학기의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 평점 평균 3.0 이상인 학생. 다만, 졸업예정학기는 본교에서 졸업이 가능한 학생에 한한다.
6. 단기해외연수는 본교에서 2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으로서 직전 학기의 신청학점이 15학점(4학년 12학점) 이상인 학생. 다만, 졸업예정자는 어학연수 학점을 본교의 졸업이수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기해외연수에 참여할 수 있다.
7. 기타 총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학생

제6조(공고 등) ① **국제교류처장**은 3월 중에 당해 학년도 해외연수에 관한 운영계획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국제교류처장**은 4월 중에 당해 학년도 해외연수의 운영계획에 관한 학생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③ **국제교류처장**은 해외연수 개시일 3개월 전에 10일 이상 해외연수국가 및 협력기관, 해외연수일정과 내용, 선발인원과 요건, 경비의 지원을 하는 경우 그 내용, 제출할 서류 등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해외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서와 서류를 **국제교류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서식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2. **국제교류처**에서 해외연수 공고 때 고시한 서류

제8조(선발과 제한) ① 장기해외연수 및 단기해외연수는 재학 중 각각 1회에 한하여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삭제
- ③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의 일부를 본교에서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예산을 고려하여 해외연수 선발자의 인원을 학기 또는 연단위로 한정할 수 있다.
- ④ 제15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국명령을 받았거나 장학금의 환수조치를 받은 학생은 선발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해외연수생 선발은 국제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 시행한다.
- ⑥ **국제교류처장**은 해외연수 개시 전에 연수생에게 연수의 내용, 연수국가 및 협력기관에 대한 소개, 연수생활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여야 한다.

제9조(해외연수기간) ① 복수학위프로그램의 기간은 4학기 이내로 한다.

- ② 장기해외연수의 기간은 2학기 이내로 한다.
- ③ 단기해외연수의 기간은 2개월 이하로 하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실시한다.

제10조(등록 등) ① 해외연수 참여학생은 본교와 협력기관의 학사일정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본교와 협력기관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 ② 해외연수에 참여하여 협력기관에서 수학하는 기간은 본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보며, 그 기간 중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제11조(이수학점의 한도) ① 복수학위프로그램과 장기해외연수의 인정학기는 참여 학기로 하고, 학기당 이수 학점은 18학점 이하로 하며, 초과 이수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직전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학생은 다음 학기(본교 및 본교와 학점 교류 협약이 체결된 기관에서 수학하는 학기 포함)에 21학점(임상병리학과 24학점)까지 신청(취득)할 수 있다. 한의과대학은 제외한다. 또한, 간호학과의 경우 2025학년도에는 4학년에 한해 최대 24학점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6학년도 이후에는 최대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 ② 복수학위프로그램의 최대 인정학점은 장기해외연수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의 1/2 이내로 한다.
- ③ 단기해외연수의 학점인정은 6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2조(학점인정) ①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이를 협력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해외연수 참여학생은 협력기관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교무연구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협력기관에서 취득한 교과목은 본교 학부(계열)기초, 교양과목, 전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을 각각 이수한 것으로 본다.
- ④ 이수교과목 중 학부(계열)기초 및 전공과목 학점인정은 해당 학과(부)장의 확인을 거쳐 **교무연구처장**이 인정하고, 교양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의 학점인정은 본교 관련 교과목 담당 교수와 협의하여 **교무연구처장**이 인정한다. 다만, 단기해외연수 참여학생의 학점인정은 **국제교류처장**의 요청에 의하여 **교무연구처장**이 인정한다.
- ⑤ 협력기관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수 단위와 성적평가 방법이 본교와 다른 경우 해당 학과의 심사를 거쳐 본교의 성적평가 기준으로 환산하여 인정한다.
- ⑥ 협력기관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이수한 교과목의 명(名)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교과목의 내용에 따라 본교에서 개설한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복수학위프로그램 참여학생의 학위수여에 관한 특례) ① 본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논문심사 등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협력기관의 규정 또는 교류협정서에 명기된 협력기관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본교 및 협력기관의 학위를 수여한다.

② 본교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협력기관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교의 학위만을 수여한다.

③ 본교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협력기관의 졸업요건만을 충족한 경우에는 협력기관의 학위수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본교의 학위는 본교에서 수여하며, 협력기관의 학위는 협력기관에서 수여한다. 다만, 협력기관과 협의하여 본교에서 협력기관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경비) ① 교류협정서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해외연수에 필요한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교는 국제교류의 활성화와 우수학생 및 생활이 곤란한 학생에 대한 연수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액은 국제협력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장학금의 환수 등) 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서 해외연수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한 경우 본교는 연수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삭제)

2. 단기해외연수의 경우 당해 학기에 3학점 미만의 학점을 취득한 때

3. 본교 및 협력기관의 학칙 또는 교류협정 등을 위반하여 본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킬 때

4. 출석율의 저조, 연수지도교직원의 연수지도에의 불응 등으로 인하여 해외연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② 본교는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학생의 해외연수를 중지하고 귀국을 명할 수 있으며, 귀국명령을 받은 학생은 지체없이 귀국하여야 한다.

③ 본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환수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국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연수보고서의 제출과 포상) ① 해외연수 참여학생은 연수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국제 교류처장**이 정하는 양식에 맞추어 연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교는 해외연수의 성과가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국제교류처장**은 협력기관과 협의하여 수업참여도, 연수태도 등에 대한 해외연수 참여학생 개인별 리포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해외연수지도교직원) ① 해외연수지도교직원은 **국제교류처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

한다.

② 해외연수지도교직원의 여비는 출장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외연수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국제교류처장은 연수기간 동안 해외연수지도교직원 또는 협력기관의 주무 담당자와 연수생의 현지적응과 생활, 연수생의 애로사항, 연수태도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교환·파견학생

제18조(자격) 본교와 협력기관의 재학생으로서 각 기관에서 추천한 학생으로 한다.

제19조(수학허가) ① 교류협정에 따라 지원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수학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은 제1항의 수학허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학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수학기한) 수학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복수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외국대학 학생은 양측 대학에서 동등한 기간을 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학생은 본교와 협력기관의 교류협정에 따라 수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수업료 및 경비)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학사일정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파견대학의 수업료는 교류협정에 따른다.

② 교환·파견학생 프로그램에 필요한 제경비는 학생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파견학생에 대하여는 최대 본교 수업료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제22조(수강)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학사일정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3조(학점인정) 수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수강신청을 한 교과목에 대하여 소속 대학의 학칙과 학사일정에 따라 학점을 부여한다.

제24조(신분의 보장) 수학허가를 받아 등록한 학생은 소속 대학의 학생과 동일한 신분을 갖는다.

제25조(학칙의 준수) 수학허가를 받아 등록한 학생이 소속 대학의 학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지원) 교류협정에 따라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면제 등 학습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은 2015학년도 줄

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해외연수에 관한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② 다른 규정에서 해외연수에 관한 내규 및 그에 관한 조문을 인용하는 것은 이 규정 및 그에 해당하는 이 규정의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해외연수에 관한 내규에 따른 학생교류에 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의 입학성적최우수 학생 및 입학성적우수학생에 대해서는 해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11조 제5항을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1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제교류센터-313, 2013.4.26)

(시행일) 본 내규는 201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제교류팀-1190, 2015.12.3)

① 이 내규는 201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내규 시행일로부터 해외연수생 선발에 관한 준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국제교류팀-194, 2025.02.27)

이 내규는 2025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